재정경제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 1. 20.(화) 10:00 배포 2026. 1. 19.(월) 17:00

국내시장 복귀계좌(RIA),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

- 「2026년 경제성장전략」에서 발표한 해외주식 국내투자 복귀 양도소득세 특례 및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

재정경제부는 **「2026년 경제성장전략」**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**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**을 추진한다.

먼저, **국내시장 복귀계좌**(RIA, Reshoring Investment Account)**에서 해외주식을 매도**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**1년간 투자**하는 경우, 해외주식 **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**를 신설한다.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고, **복귀 시기**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*한다.

* (공제율) '26년 1분기 매도 100%, 2분기 매도 80%, 하반기 매도 50%

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**투자금**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**자유롭게 투자**할 수 있으나,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**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**에 **비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**할 예정이다.

다음으로, **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**하는 경우, **투자액의 5%**를 **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**(인당 공제한도 500만원)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, **국내 모기업**이 **해외자회사**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**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**도 **95%에서 100%로 상향**한다.

위 해외주식 **국내복귀·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**와 **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**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**'26년에만 한시적**으로 **적용**할 예정이다.

이에 더해, '26년 6~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**3년 이상 장기 투자**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**펀드에서 발생**하는 **배당소득**에 **9% 분리과세**하고, 투자금액에 따라 **최대 40%를 소득공제***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, **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**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**배당소득 9% 분리과세**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.

* (3천만원 이하분) 40%, (3천만원~5천만원 이하분) 20% (5천만원~7천만원 이하분) 10%

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**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**될 예정이며,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**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**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**출시할 계획**이다.

담당 부서	세제실 금융세제과	책임자	과 장	박은영 (044-215-4230)
		담당자	사무관	남원우 (namwonwoo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	권은영 (eyk9228@korea.kr)
	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	책임자	과 장	권기중 (044-215-4650)
		담당자	사무관	이금석 (gslee0819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 고 **개정안 주요내용**

1. 해외주식의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(조특법 §91의26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**국내시장복귀계좌**(RIA*) **투자**에 대한 **과세특례** *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○ (**요건**) RIA를 통해 **해외주식 매도** 후, **매도 대금**을 **1년간 RIA 내에서 투자** - (**매도 방법**) **'25.12.23. 기준 보유**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시킨 후, **RIA 내에서 매도** (**매도금액 5천만원 한도**) - (**투자**) **국내주식** 및 **국내주식형 펀드**에 **1년간 투자** *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 ▪ 단, RIA 내 **국내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원금 초과 수익**은 **수시 출금 가능** ○ (**혜택**) **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비율 공제** ❶ '26.3.31.까지 매도: 100% 공제 ❷ '26.6.30.까지 매도: 80% 공제 ❸ '26.12.31.까지 매도: 50% 공제 - 단, **'26년 중 해외주식 매입 금액**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**공제 비율 조정** **[조정 비율]** $1 - \frac{RIA\text{외 해외주식 순매수금액}^*}{RIA\text{내 해외주식 매도금액}}$ * 기간별 매수·매도금액에 1분기 100%, 2분기 80%, 하반기 50%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순매수금액 ○ (**적용기한**) **'26.12.31.**까지

<개정이유>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RIA로 해외주식을 매도한 분부터 적용

2. 해외주식 환헷지 시 양도소득세 혜택 신설(조특법 §91의27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개인투자자용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(이하 '환헷지 상품')에 대한 **과세특례** ○ (요건) **환헷지 상품 투자** ○ (혜택) **'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헷지 상품 투자액의 5%를 공제** - **환헷지 상품**에서 발생한 **파생상품 양도소득**에 대해서도 **비과세 적용** ○ (한도) **500만원 한도** ○ (적용기한) - (**환헷지 상품**) **'26.12.31.**까지 **투자** - (**해외주식**) **'26.12.31.**까지 **매도**

<개정이유> 외환시장 안정화 및 개인 투자자 환위험 관리 지원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3. 외환시장 안정화 세제지원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(농특법 §4)

현 행	개 정 안
□ 농어촌특별세* 비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세 감면 *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%	□ **비과세 대상 추가**
○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	○ (좌 동)
<추 가>	○ **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** ○ **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**

<개정이유>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법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

4.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(조특법 §23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□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	□ **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**
○ (**대상**) **외국자회사**로부터 받은 **이익의 배당금, 분배금**	○ (좌 동)
○ (**외국자회사 요건**) 지분율 10% 이상,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	
○ (**익금불산입률**) 95%	○ (**익금불산입률**) 100% - **출자자금 차입이자**는 차감하여 **익금불산입** ○ (**적용기한**) **'26.1.1.~12.31.**

<개정이유> 해외자산 환류를 통한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경제 활성화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

5.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(조특법 §91의29,§129의2 등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<신 설></td><td>□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

○ (대상) ❶첨단전략산업 및 기업에 대한 ❷의무투자비율을 충족하는 ❸공모 집합투자기구*에 투자한 거주자**
*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
** 전용계좌의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

○ (요건) 전용 계좌를 통해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3년 이상 투자

- 소득공제는 새롭게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시 적용

○ (세제지원)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

- (소득공제)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 차등
<table><tr><th>투자금액</th><th>공제액</th></tr><tr><td>3천만원 이하</td><td>투자금액의 100분의 40</td></tr><tr><td>3천만원 초과
5천만원 이하</td><td>1,200만원 + (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20)</td></tr><tr><td>5천만원 초과
7천만원 이하</td><td>1,600만원 + (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)</td></tr><tr><td>7천만원 초과</td><td>1,800만원</td></tr></table>* 소득공제 종합한도(연간 2,500만원) 적용

- (배당소득) 9%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
(투자일로부터 5년 적용)

○ (추징) 투자 후 3년 경과 전 양도 또는 환매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

○ (한도) 투자금액 2억원

○ (적용기한) ’30.12.31.까지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분부터 적용

6.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(농특법 §4)

현 행	개 정 안
□ 농어촌특별세* 비과세 대상인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저축 상품 *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%	□ **비과세 대상인 저축 상품 추가**
○ 엔젤투자 소득공제 ○ 소득공제 장기펀드 ○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	○ (좌 동)
<추 가>	○ **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소득공제**

<개정이유>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법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

7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(조특법 §91의28,§129의2 등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(BDC*) 대한 과세특례 * Business Development Company, 벤처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 ○ (요건) 전용계좌*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 * 전용계좌의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○ (과세특례) 배당소득에 대해 9% 분리과세 ○ (납입한도) 2억원 ○ (적용기한) '28.12.31.까지 받는 배당소득

<개정이유> 벤처투자 활성화

<적용시기> 법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